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74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전혜숙·강민정·김정호

김회재 • 민홍철 • 박광온

서영교 • 안규백 • 윤후덕

이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법률에 모호한 표현이 다수 존재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 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으로, "공단에 지원한다"를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고부담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고부담금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 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 담) ① -----해당 연도 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 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 -----부담한다. 원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국고부담금은 해당 연 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 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 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국고부담금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 <삭 제>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